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6. 18.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6월 3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6.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관리실장 우병수)

###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성장 체계화 및 기반 마련

### 2. 주요내용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안 제6조)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안 제7조)
-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안 제14조)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2010년 4월 13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 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안 제6조)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안 제7조)
  -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점검 및 평가 실시
-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시행령 제15조)
  -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2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안 제14조) 등임.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1월 13일 제정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2010년 4월 13일 제정공포)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 요지 : “생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504
----------	-----

제출연월일 : 2010년 5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녹색성장 체계화 및 기반 마련

### 2. 주요내용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안 제6조)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안 제7조)
-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안 제14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발체 : 붙임

##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슬로공동체”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살리기 운동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도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한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4. 도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5. 도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 교통, 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군과의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제6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추진계획은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방추진계획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여 충청북도 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방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11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3장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제8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지방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제7조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차

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녹색길, 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등 녹색자원 조성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급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등

## 제5장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촉진

**제14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녹색성장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하 공직자와 도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주민대표 및 여성리더 등에 대한 녹색성장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sub>6</sub>)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지열)·강수(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기 타

1. 슬로공동체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살리기 운동을 말한다.

- 지역공동체 자립여건 마련위한 지역슬로공동체 활성화 협조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1104, 2020. 3.31)